

의안번호	2217423
의 퇴 인	김선민의원
회 답 일	2026. 6. 25.
추 계 번호	26B12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500만원(연평균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안 제50조제1항)	65	-	-	-	-	65	13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u>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한다</u>),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해당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의 설치·개선 및 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기준에서 규정할 구조·시설의 내용 및 설치 대상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50조제1항)
 - 현행법¹⁾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로의 구조 및 도로안전시설 등의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

1) 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서 정하고 있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²⁾에서는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0cm를 표준으로 하되, 디자인, 미관, 경제성을 고려하여 110~120cm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구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량 내 자살 예방 등 추락방지 구조·시설에는 현행 기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난간 및 차량 방호울타리’뿐만 아니라 ‘조명시설, 폐쇄회로카메라, 구조물품 보관함 등’도 해당될 수 있으며, 자살 위험도, 보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따른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수립 비용은 유사한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수립 연구용역의 평균 비용을 참조하여 추계함
 -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방호울타리

2.2.4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 이의 설치에는 도로·교통 조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3] 차량방호안전시설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0 cm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높이는 노면(보도가 있는 경우는 보도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그러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를 디자인, 미관, 경제성을 고려하여 110~120 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패널 틈새)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교량의 조망권 확보나 경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패널의 각도를 조정하는 등 난간이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형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지침에 제시된 난간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난간이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표 2] 유사사례의 내용

(단위: 백만원)

실시 기관	연구용역명	실시년도	예산
국토교통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마련 연구	2024	80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기준(안)에 관한 연구	2025	5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계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	2025	60
평 균			65

자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추계 결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개정안에 따라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500만원(연평균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교량 내 추락방지 구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65	—	—	—	—	65	13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